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6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이건태·양문석·문진석

김한규 • 허 영 • 이개호

조인철 · 위성곤 · 정일영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 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 제8조).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수사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통지로 인하여 피의자·피고인 또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평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 또는 공소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해		
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당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수사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		
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	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		
<u>수 있다</u> .	다. 다만, 이와 같은 통지로 인		
	하여 피의자・피고인 또는 범		
	죄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		
	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ㆍ평		
	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		
	피해자가 통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u>니하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